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※ 유의 : 의료비의 청구는 진료일을 기준으로**1개월 이내**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【 신청인 작성 】 | 결재 | 담당 | 행정이사 |
|  |  |
| 학번 : | 이름 : | 학과 : | 남 ․ 여  |
| □일반청구 □특별청구 | 병명: |  | □학사 □석사 □박사 □통합 |
| 국민건강보험 적용: □예 □아니오 | 실지급액: ￦※실지급액은진료비와 약제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합입니다. |
|  **지급받을 계좌번호** | **(우리은행)*** 본인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.
 |
| 【 발병(치료) 경위(또는 증세) 】1. 언제 : 년 월 일 시 분경,2. 어디서 :3. 어떻게 다쳤나요? (왜, 치료했나요?) : 【 구비서류 】\* 일반청구 : 진료비 계산서 구분 영수증, 실 결제 영수증\* 특별청구 : 진료비 계산서 구분 영수증, 실 결제 영수증, 진단서, |
| 본인은 뒷면에서 명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,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의료보조금을 신청합니다.. 년 월 일　신청자(본인) : (서명)연락처(휴대폰) : - - |

**【 이 곳은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】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【 정 산 】▷ 진료구분 : □보험 □일반▷ 지급구분 : □소액 □특별▷ 실지급액 : ￦ | 【 특이사항 】 | 【문서 번호】 |

포항공과대학교

**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규약**

**제 4 장 의료보조금 지급 중**

**제 17 조 [진료비의 범위]**

② 법정 전염성 질병의 경우 유, 무 확인을 위한 1차 진료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, 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 18 조 [지급 한도]**

의료보조금 지급 한도액은 1 인당 한 학기에 100 만원으로 한다.

**제 19 조 [청구 제한]**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의료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.

1. 주근깨,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

2. 보철, 의치, 치열교정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질환

3. 안경, 콘텍트렌즈 등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과질환

4. 미용목적의 시술 및 수술

5. 마약중독,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등

6. 보조기, 의수족, 보청기, 의안 등 보조의료기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

7.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천성 질환

8. 예방접종 (파상풍 등 치료용 예방주사 약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9. 교통사고나 폭력사고 등 제3자가 지불의무를 지닌 사고 및 질병. (단, 제3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)

10. <삭제 2013.08.29>

11. 임신으로 인한 정기검사 및 출산비용

12.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

13.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안전장치를 미착용 한 경우

14. 검사성 진료 (단,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
15.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혜택 제외사항

16. 기타 이사회에서 의료보조금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료비

**제 20 조 [청구 구분 및 절차]**

1. 의료보조금 일반청구 및 특별청구 1호(제20조3항1호: 200,000원 이상의 치료.진료)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
2. 의료보조금 특별청구 2호(제20조3항2호: 수술, 입원 및 동일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10회 이상의 연속 치료)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한다
3. 지급 구분은 일반청구와 특별청구로 나뉜다.
4.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.
	1. 200,000원 이상의 치료·진료
	2.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10회 이상의 연속치료
5. 일반청구는 특별청구 대상이 아닌 모든 치료·진료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 중 급여에 대한 결제 금액이 하루 본인부담금 10,000원 이상인 항목으로 정의한다.
6. 의료보조금 청구 시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,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결제영수증(카드 혹은 현금영수증)을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대학원총학생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7. 특별청구 시 추가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 21 조 [부당청구 회원 징계]**

① 이사회는 필요 시 본회 회원을 소환하여 제 19 조에 의거하여 부당청구를 심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가 부당청구라고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당청구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.

1. 최초 적발 시 지급액을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반환한다. 이에 불응할 시 회원 자격을 졸업 때까지 박탈한다. 2. 재차 적발 시 지급액을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반환하고 회원 자격을 졸업 때까지 박탈 한다.